

순천제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 12. 29.

개정 2023. 08.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제일대학교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순천제일대학교 학칙」 제52조제2항제31호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하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인권침해 등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의사에 반한 신원 노출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 나.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7.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사는 상담·조사·교육 및 연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상담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며, 성별로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센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⑦ 센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인권센터의 기능과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위원회의 운영
3.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 교육
4.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
5.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
6.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7.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학사운영처장, 기획처장, 취창업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내 구성원 중 교원위원, 직원위원 및 조교위원, 학생위원 3인을 포함하며,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규정·운영세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면 및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조사와 처리

제10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

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신고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⑦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되어 센터장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부서)이 접수한 신고나 민원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센터의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련 사건이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부서)에 계속될 경우 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은 상당한 범위에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⑩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1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0조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제10조 10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즉각적인 중지
2.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명령
3.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 등의 공모 금지
4.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공간 분리 조치
5. 상담, 진료 등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장은 센터장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의 강의, 수업, 업무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상담·조사 결과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사위원은 교직원 중 인권 문제와 학교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회 권한과 임무)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센터장과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하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해결 등 합의를 하였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⑥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제3항의 조사 및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은 종결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과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조사의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 1. 센터의 조사 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 종결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회복 방안을 서로 합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7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센터에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5장 심의위원회

제2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③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위원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제 3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한다.
 - 1. 교직원
 - 2.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침해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해당 사건의 처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전문상담사로 두고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 2.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 3. 인권침해 등 사건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 4. 그 밖에 인권침해 등 예방·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① 제13조의 조사위원회와 제21조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등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센터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도 지체없이 통보한다.

④ 회의의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센터장과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1. 조사절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 과정 중 검토되지 못한 새로운 근거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재심의를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구제 및 징계 요청 등

제27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과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며,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당사자가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31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센터 및 위원회의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피해 재발 방지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징계를 요청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 명의로 피신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하도록 센터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신고인에게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피신고인이 교육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가중처벌의 요청)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당사자의 권리 등

제30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1조(신고자 및 피해자 등 보호) ①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 등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비밀 유지의 의무) 인권침해 등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및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 기관(부서)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 1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08. 10.>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개정 2023. 08. 10.>